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6. 10. 10. (월)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정 영 수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6년 9월 27일

○ 회부일자 : 2016년 9월 28일

3. 제정이유

충청북도 공립대안학교 운영의 체계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안 제3조)

나. 대안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대안교육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립대안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립대안학교의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에 목적을 둔 것으로,
- 우리 사회에서 학교생활부적응 등으로 인한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고, 청소년 우울과 불안, 자살과 같은 정신 건강 고위험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 기존의 획일적 체제의 학교가 아닌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교육 과정과 교육활동으로 현행 학교교육의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공립대안학교 운영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충북도교육청 차원에서 공립대안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적 효과 창출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담은 이번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